

의안번호	2217983
의 퇴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6. 7. 3.
추 계 번호	26B18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 추계)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의 종류를 현행 7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9,900만원(연평균 4,0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방송광고 종류 단순화 (안 제73조제2항)	99	100	—	—	—	199	40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스템 개선의 시기, 내용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3조(방송광고등)	방송광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유형별 방송광고의 종류·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1. <u>방송프로그램외 광고</u>: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u>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외부에 편성되는 광고</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u>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내부에 편성되는 방송광고</u> 3. <u>복합형 광고: 제1호 및 제2호 중 하나로만 분류하기 어렵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방송광고</u> <삭 제> 4. <u>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u> <삭 제> 5. <u>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u> <삭 제> 6. <u>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u> <삭 제> 7. <u>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u> ※ 방송광고의 종류를 현행 ‘7개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에서 ‘3개 유형(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으로 단순화	
2	안 제73조의3(방송광고 등 시청자영향평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술발전과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 종류로 인해서 시청자 권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3조(방송광고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에 따른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 시스템’ 개선(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추계
2	안 제73조의3(방송광고 등 시청자영향평가)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 종류로 인해서 시청자 권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의 종류, 그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의 발생 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개정안은 시청자영향평가의 대상과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방송광고 종류 단순화(안 제73조)

- 개정안은 방송광고의 종류를 현행 ‘7개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에서 ‘3개 유형(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으로 단순화하는 것임

[표 2]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방송광고 종류 비교

현행	총량제한	총량제한	총량+시점제한	총량제한	총량+횟수제한	총량제한	총량제한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개정안	프로그램 외 광고(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중간광고)					프로그램 내 광고
	복합형 광고(시보광고, 자막광고)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의 종류를 단순화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의 개선(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은 방송광고의 유형마다 광고총량을 산출하며, 광고크기 및 위반비율 등을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를 생성·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 유형이 단순화될 경우 광고 총량 산정 및 위반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3]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 개요

○ (목 적) 매월 정기적으로 326개 채널('26년 기준)에 대한 방송법 위반 여부(방송광고 시간·횟수 제한 위반 등)를 판단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고, 위반영상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 등 H/W를 2014년부터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 ○ (기 능) 방송사업자들이 편성한 방송광고가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분석 및 위반 영상 보관, 모니터링 직원이 안정적으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등 운영 ○ (예 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26)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 (모니터링분석시스템 구축) 분석시스템을 통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조성 -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운영) 광고시간,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 및 사업 운영	1,692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의 개선(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추계함

[표 4] 개정안에 따른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 개선 계획(안)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개편 내용	보고서 Tool* 구입 및 기본 로직 재설계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포시에스, OZ Report 8.0, 웹리포팅솔루션, 4Core	통계 정보, 리포트 기능 개선 등 관리자 기능 단계별 고도화 및 개발 오류 수정
소요 비용	99,410,000원	100,000,000원
산출 근거	- 소프트웨어(보고서Tool) 단가 : 17,908,000원 (조달청 조달단가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231.4점 × 기능점수 단가 605,784원 × 보정계수(규모1.28 × 연계복잡성0.88 × 성능0.95 × 운영환경1.0 × 보안성1.0)] + 이윤 10% + 부가가치세 10% ※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년 개정판)」에 따라 기능을 단위 프로세스로 나뉘 유형을 분류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기능점수를 산정(간이법)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의 종류를 현행 7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9,900만원(연평균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99	100	—	—	—	199	40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스템 개선의 시기, 내용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스템 개선의 시기, 내용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